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동양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동양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4.8.2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8.29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 수익증권 1조좌
7.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동양자산운용 본점
   (☎02-3770-1300 www.tyam.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9.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아인슈타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79788
A	80183
C1	80301
C2	27104
C3	27105
C4	27106
C5	27107
C-e	80421
C-I	97075
C-P	A1956
S	AP25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종류: 증권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 홈페이지 참고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동양 아인슈타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79788
A	80183
C1	80301
C2	27104
C3	27105
C4	27106
C5	27107
C-e	80421
C-I	97075
C-P	A1956
S	AP25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8.02.29	최초 설정
2008.10.27	국내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위한 투자대상 변경
2009.4.29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신탁 명칭 변경 동양 퀀트 주식투자신탁 1호→ 동양 퀀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0.5.27	투자신탁 명칭 변경 동양 퀀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 동양 아인슈타인(퀀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0.10.29	Class 신설(Class C-I) 및 책임운용역 변경(양정경→안태호)
2011.3.24	Class 신설(Class C-P)
2011.9.2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동양 아인슈타인(퀀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 동양 아인슈타인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4.2.28	종류수익증권신설(Class S수익증권)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이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동양증권빌딩 02-3770-13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4.8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다른 운용 자산규모	
안태호	1969	팀장	18개	824 억원	한일증권 (1.5년) 하나은행 (3.8년) 산은자산운용 (0.8년) 한국투자신탁운용 (7.4년) 동양자산운용 투자공학팀장 (현직)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투자공학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주1)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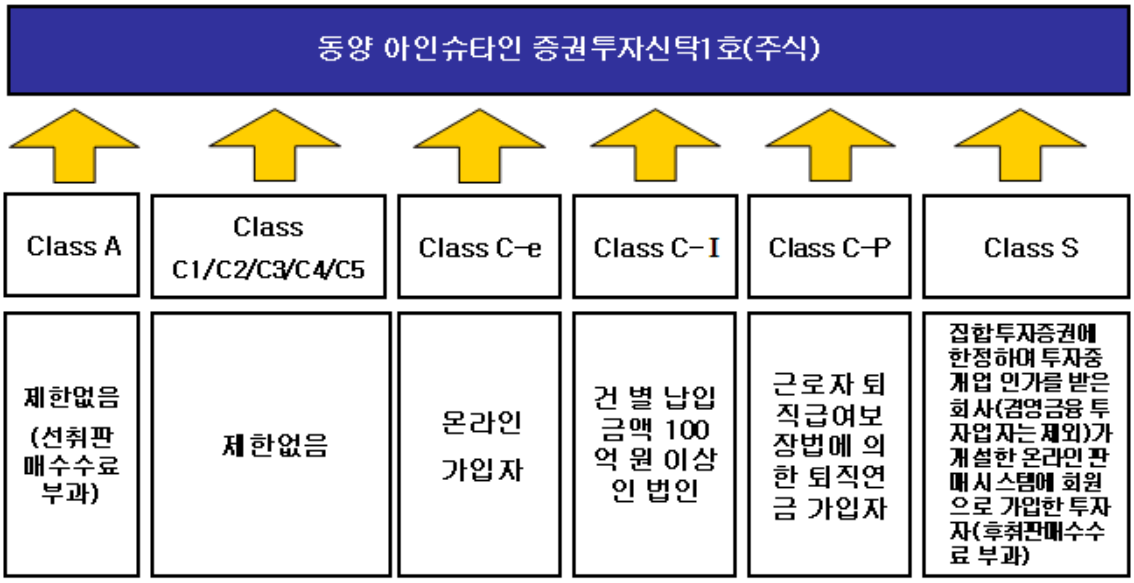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별	매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펀드코드: 80183)	매입자격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연 0.75%
Class C1 (펀드코드: 80301)	매입자격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2로 자동전환	연 1.5%
Class C2 (펀드코드: 27104)	Class C1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3로 자동전환	연 1.35%
Class C3 (펀드코드: 27105)	Class C2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4로 자동전환	연 1.215%
Class C4 (펀드코드: 27106)	Class C3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5로 자동전환	연 1.094%

Class C5 (펀드코드: 27107)	Class C4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0.984%
Class C-e (펀드코드: 80421)	온라인 가입자 전용	
	(1)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연1.296%
	(2)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0월 24일까지	연1.192%
	(3)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연1.088%
	(4) 2013년 10월 25일 이후	연0.984%
Class C-I (펀드코드: 97075)	건별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연0.01%
Class C-P (펀드코드: A19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0.811%
Class S (펀드코드: AP25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연 0.3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국내 주식"이라 함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 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주식	60% 이상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40% 이하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어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 등"이라 합니다.)
장내파생상품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일정기간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기타 사항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등의사유로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당사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은 팀원간의 분화된 리서치에 근거한 합의제에 의해 판단 오류를 최소화 하는 운용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운용전략

계량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퀀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 지수 수익률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포트폴리오 조합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차익거래, 배당, 주식대여, Event Driven, 공모주 등의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퀀트 포트폴리오 구성

KOSPI 대형주 위주로 구성

계량분석을 활용한 동양자산 투자공학팀 자체 시스템에 의해 저평가종목, 혹은 상승 가능성이 큰 종목군을 선택하여 “시장수익률 + α” 추구

선택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산된 편입비율로 최적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사전에 계산된 전략에 따라 정기적인 리밸런싱

■ 퀀트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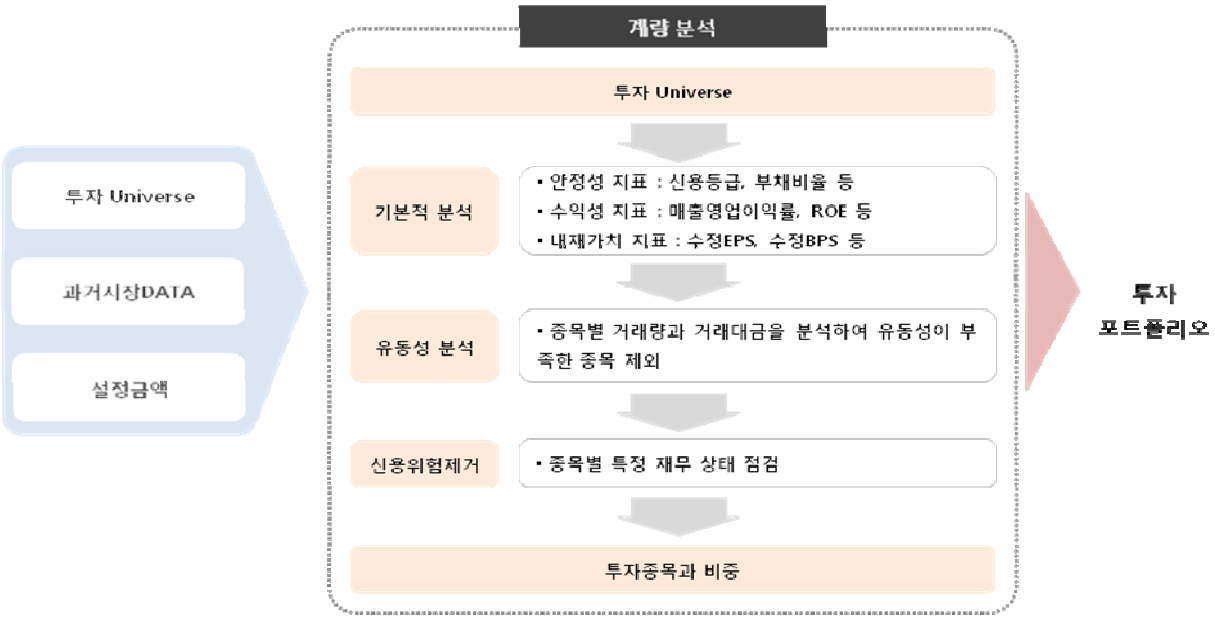

■ 차익거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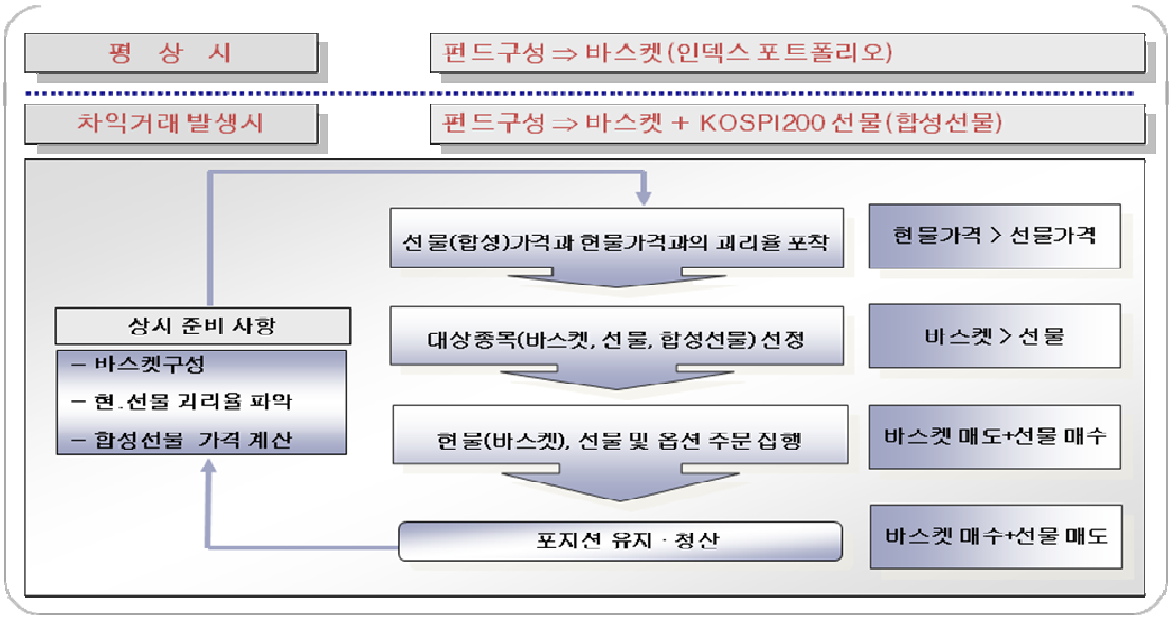

■ 배당, 주식대여, Event Driven, 공모주 등으로 안정적 초과수익 추구

■거래비용효과

차익거래 :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위한 차익거래는 기회가 생길 때 마다 일정 금액 수준 이상의 거래가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거래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만 기회를 포착하여 매매를 수행하므로 거래비용에 의한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적 종목 교체매매 : 일종의 퀀트 전략으로 신호 발생에 따라 잦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략 선택시 거래비용을 감안하여 선택하므로 거래비용이 충분히 반영 됩니다.

다.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 x 100%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일정시점 대비 현재의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현재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

라.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당사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BM 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Tracking Error 를 측정, 모델 리스크를 통제함

실제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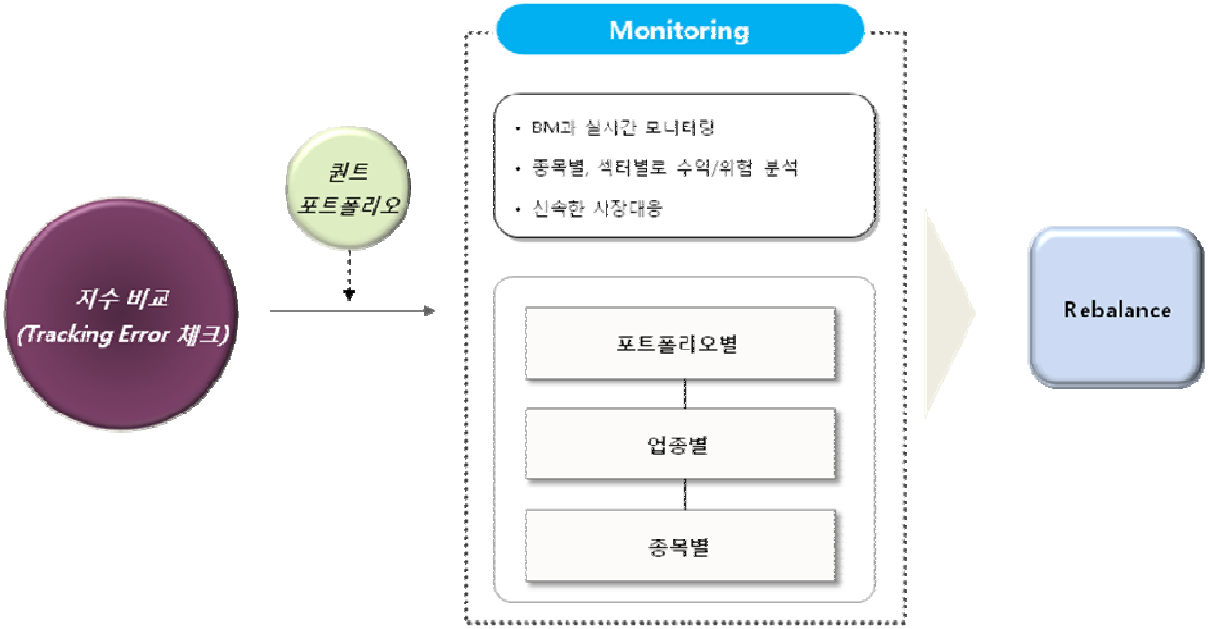

주) 상기 운용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마. 용어정리

차익거래전략 : 일정 기간 후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두 자산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차이나 나는 경우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여 그 차익을 획득하는 전략

퀀트분석 (계량분석) :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기초로 다양한 수치분석 등의 시스템화된 분석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및 투자 전략을 구성하는 투자기법. 운용역의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여 투자 판단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함.

TE :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바. 수익구조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혹은 상승 가능성이 큰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투자위험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 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게 되는 주식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 등급중 2 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 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투자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영업환경 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주식가격은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큰폭의 원본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식시장 변동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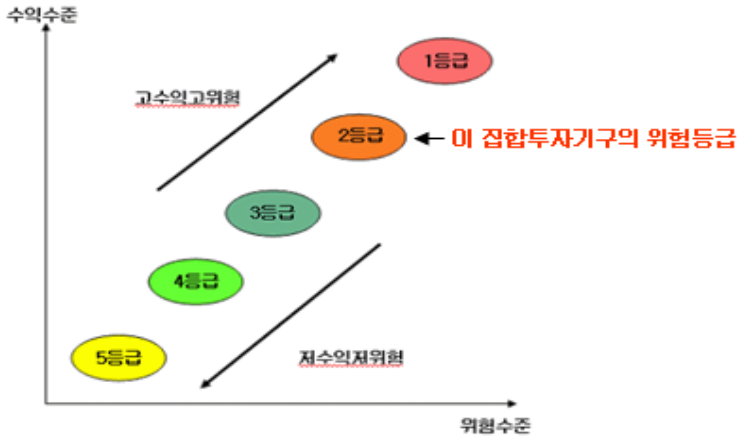

구 분	수 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 변동성 또는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입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장내/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펀드수익변동성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펀드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상품 투자펀드, 원금비보장형 ELF
2등급	높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에도 제약이 있는 펀드입니다.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므로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 및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 주식에 5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혼합형)펀드, 인덱스펀드,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투기등급 및 정크본드를 30%이상으로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F
3등급	중간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가격변동성,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로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기초자산 등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중간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 주식에 50% 미만 투자하는 혼합형펀드, 투기등급 30%미만 투자하는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F
4등급	낮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국공채, 회사채(BBB-등급이상)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시장금리상승에 의한 가격하락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채권형펀드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 종류의 펀드는 현금, 국공채 및 단기회사채(AA수준) 등 단기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이자수익을 추구하지만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되는 펀드입니다. 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펀드예시: MMF 펀드

주1) 이러한 위험 등급은 당사에서 예시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등급의 분류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비추어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에 적합한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주2) 해당 펀드의 위험등급은 판매사별로 상향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종류별	매 입 자 격	판매보수
Class A (펀드코드: 80183)	매입자격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연 0.75%
Class C1 (펀드코드: 80301)	매입자격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2로 자동전환	**연 1.5%**
Class C2 (펀드코드: 27104)	Class C1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3로 자동전환	연 1.35%
Class C3 (펀드코드: 27105)	Class C2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4로 자동전환	연 1.215%
Class C4 (펀드코드: 27106)	Class C3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경과시 Class C5로 자동전환	연 1.094%
Class C5 (펀드코드: 27107)	Class C4 수익증권 1년이상 보유시 전환하여 매입가능,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연0.984%
Class C-e (펀드코드: 80421)	온라인 가입자 전용	
	(1)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연1.296%
	(2)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0월 24일까지	연1.192%
	(3) 2012년 10월 25일부터 2013년 10월 24일까지	연1.088%
	(4) 2013년 10월 25일 이후	연0.984%
Class C-I (펀드코드: 97075)	건별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연0.01%
Class C-P (펀드코드: A19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연0.811%**
Class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	**연 0.35%**

(펀드코드: AP253)	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5시(오후3시)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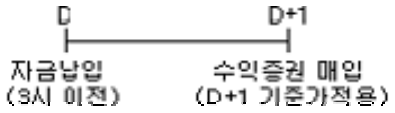

○15시(오후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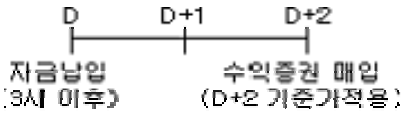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환매신청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시(오후3시)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5시(오후3시)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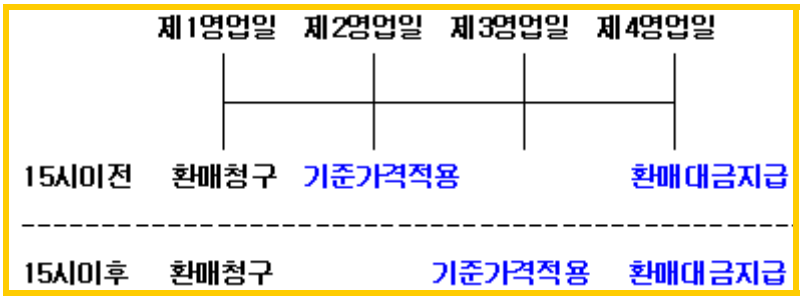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명칭 (클래스)	매입자격	수수료율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30일 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이익금의 30%
C1	제한없음	
C2	C1보유1년	
C3	C2보유1년	
C4	C3보유1년	
C5	C4보유1년	
C-e	온라인가입자	
C-I	건별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S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온라인판매시스템 가입자	
부과기준		이익금 및 수익증권 보유기간 기준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에 한합니다. Class A 및 Class C-e, Class C-I, Class C-P, Class S는 전환이 가능한 종류 수익증권에서 제외합니다.

-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Class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2)상기 내용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상기 내용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전환으로 최초로 설정되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전환이전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고(적용)합니다.

(4)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환일이 수익증권의 매수 또는 환매결제일 이전(결제일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가장 늦은 결제일의 익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처리합니다.

(5)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 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CDSC(이연보수체계) 시행에 따라 Class C1 종류 수익증권은 수익자별로 Class C1 종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수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일괄전환처리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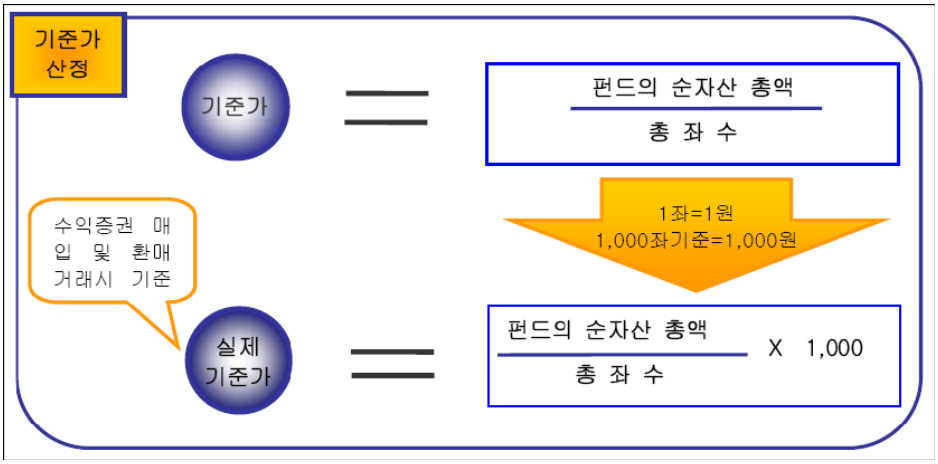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 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한 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매입자격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매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 1%이하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C1	제한없음	-	-		-
C2	C1보유1년	-	-		-
C3	C2보유1년	-	-		-
C4	C3보유1년	-	-		-
C5	C4보유1년	-	-		
C-e	온라인 가입자	-	-		-
C-I	건별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	-		-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		-
S	후취판매수수료 부과, 온라인판매 시스템 가입자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이익금 및 수익증권 보유기간 기준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증권거래 비용
A	0.75	0.75	0.04	0.012	0.0330	1.5850	0.1499
C1	0.75	1.5	0.04	0.012	0.0914	2.3934	0.2024
C2	0.75	1.35	0.04	0.012	0.0914	2.2434	0.2024
C3	0.75	1.215	0.04	0.012	0.0914	2.1084	0.2024

C4	0.75	1.094		0.04	0.012	0.0914	1.9874	0.2024
C5	0.75	0.984		0.04	0.012	0.0914	1.8774	0.2024
Ce	0.75	2010.10.25~2011.10.24	1.296	0.04	0.012	0.0404	2.1384	0.1271
		2011.10.25~2012.10.24	1.192	0.04	0.012	0.0404	2.0344	0.1271
		2012.10.25~2013.10.24	1.088	0.04	0.012	0.0404	1.9304	0.1271
		2013.10.25 이후	0.984	0.04	0.012	0.0404	1.8264	0.1271
C-I	0.75	0.01		0.04	0.012	0.0404	0.8524	0.1271
C-P	0.75	0.811		0.04	0.012	0.0330	1.6460	0.1499
S	0.75	0.35		0.04	0.012	0.0330	1.185	실비
지급 시기	3개월 후급	3개월 후급		3개월 후급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또는 유사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예시

(단위:만원)

구분	1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Class A	26.1	59.9	96.0	197.6
Class C1,2,3,4,5	24.5	75.5	129.1	275.4
Class C-e	21.9	67.6	115.9	249.1
Class C-I	8.7	27.3	47.4	105.5
Class C-P	16.9	52.3	90.1	196.2
Class S	12.1	37.8	65.5	144.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

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투자수익율,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의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총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로서 실현된 이익과 평가이익을 모두 유보하는 경우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한편,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일반적으로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2014.1.1.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6기(2013.03.01 - 2014.02.2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5기(2011.03.01 - 2013.02.28)	성도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1.03.01 - 2012.02.28)	우리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4.02.28)	(2013.02.28)	(2012.02.28)
운용자산	6,088,083,127	16,569,882,769	17,575,221,423
증권	5,995,681,589	16,462,023,192	17,026,330,18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2,401,538	107,859,577	548,891,24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151,264,726	5,083,086,826	1,038,294,085
자산총계	8,239,347,853	21,652,969,595	18,613,515,50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110,573,619	4,929,567,549	1,152,157,706
부채총계	2,110,573,619	4,929,567,549	1,152,157,706
원본	6,368,510,977	17,290,331,340	16,578,534,072
수익조정금	32,281,941	-55,593,162	-400,030,872
이익잉여금	-272,018,684	-511,336,132	1,282,854,602
자본총계	6,128,774,234	16,723,402,046	17,461,357,802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6기	제 5기	제 4기
	(2013.03.01 - 2014.02.28)	(2012.02.29 - 2013.02.28)	(2011.03.01 - 2012.02.28)
운용수익	-62,671,690	-508,721,012	1,285,654,612
이자수익	10,630,368	19,045,270	22,613,866
배당수익	67,956,637	217,864,733	210,446,544
매매/평가차익(손)	-141,258,695	-745,631,015	1,052,594,20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531,110	954,220	1,168,62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531,110	954,220	1,168,620
기타비용	0	1,660,900	1,631,390
당기순이익	-63,202,800	-511,336,132	1,282,854,602
매매회전율	483.85	722.56	946.96

나.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단위:원]

과 목	제6기(2014.02.28)		제5기(2013.02.28)		제4기(2012.02.28)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92,401,538		107,859,577		548,891,243
1. 현금및현금성자산	92,201,538		22,047,707		548,891,243	
2. 예치금						
3. 증거금	200,000		85,811,870			
대출채권		118,120,189		409,230,982		1,070,700,000
1. 콜론	118,120,189		409,230,982		1,070,7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5,877,561,400		16,052,792,210		15,955,630,180
1. 지분증권	5,541,252,100		15,303,067,850		14,183,500,03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36,309,300		749,724,360		1,772,130,150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2,151,264,726		5,083,086,826		1,038,294,08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094,272,648		4,884,925,100		861,372,686	
2. 정산미수금			7,375,000		11,575,000	
3. 미수이자	130,448		228,580		732,723	
4. 미수배당금	55,629,580		190,558,146		164,613,676	
5. 기타미수입금	1,232,050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8,239,347,853		21,652,969,595		18,613,515,508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110,573,619		4,929,567,549		1,152,157,70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101,000,060		4,882,941,555		1,043,786,590	
2. 정산미지급금	200,000				52,630	
3. 해지미지급금	9,370,369		44,954,041		106,673,425	
4. 수수료미지급금	3,190		1,661,053		1,513,671	
5. 기타미지급금					0	
6. 기타부채			10,900		131,390	
부 채 총 계		2,110,573,619		4,929,567,549		1,152,157,706
자 본						
1. 원 본	6,368,510,977		17,290,331,340		16,578,534,07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39,736,743		-566,929,294		882,823,730	
(발행좌수 당기: 6,368,510,977 좌	이익잉여금	-272,018,684		-511,336,132		1,282,854,602
전기: 17,290,331,340 좌	수익조정금	32,281,941		-55,593,162		-400,030,872
전전기: 16,578,534,072 좌)						
(기준가격 당기: 962.36 원						
전기: 967.21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6,128,774,234		16,723,402,046		17,461,357,802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239,347,853		21,652,969,595		18,613,515,508

다.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단위:원]

과 목	제6기(2013.03.01-2014.02.28)		제5기(2012.02.29-2013.02.28)		제4기(2011.03.01-2012.02.28)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78,587,005		236,910,003		233,060,410
1. 이 자 수 익	10,630,368		19,045,270		22,613,866	
2. 배당금수익	67,956,637		217,864,733		210,446,544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43,259,604		4,163,857,819		5,911,289,115
1. 지분증권매매차익	1,752,112,947		3,365,789,100		4,416,280,91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352,975,000		629,375,000		1,066,200,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212		1,274		3,010	
7. 기타거래차익	38,171,445		168,692,445		428,805,19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285,049,409		4,910,443,054		4,859,863,533
1. 지분증권매매차손	1,824,484,067		4,059,683,408		3,625,521,30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389,606,110		637,354,220		909,268,62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2,163		145,779		166,754	
8. 기타거래손실	70,877,069		213,259,647		324,906,859	
운 용 비 용		0		1,660,900		1,631,390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660,900		1,631,39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63,202,800		-511,336,132		1,282,854,602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09924266		-0.02957353		0.077380461

2. 연도별 설정현황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173	167	33	30	142	135	64	61
2012.02.29 - 2013.02.28	166	166	92	87	85	80	173	167
2011.03.01 - 2012.02.28	99	99	188	190	122	128	166	175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121	115	23	19	86	79	58	54
2012.02.29 - 2013.02.28	114	114	63	58	57	53	121	115
2011.03.01 - 2012.02.28	20	20	121	121	26	27	114	119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0	0	0	0	0	0	0	0
2012.02.29 - 2013.02.28	7	7	2	2	9	8	0	0
2011.03.01 - 2012.02.28	1	1	9	9	3	3	7	7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15	14	5	4	14	13	6	6
2012.02.29 - 2013.02.28	12	12	9	9	7	7	15	14
2011.03.01 - 2012.02.28	4	4	18	17	9	9	12	13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lassC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7	6	2	2	9	8	0	0
2012.02.29 - 2013.02.28	2	2	8	7	3	3	7	6
2011.03.01 - 2012.02.28	0	0	2	2	0	0	2	2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3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1	1	4	4	4	4	1	1
2012.02.29 - 2013.02.28	0	0	2	2	1	1	1	1
2011.03.01 - 2012.02.28	0	0	0	0	0	0	0	0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4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0	0	1	1	0	0	0	0
2011.03.01 - 2012.02.28	0	0	0	0	0	0	0	0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lassC-I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3.03.01 - 2014.02.28	33	32	0	0	33	31	0	0
2012.02.29 - 2013.02.28	33	33	0	0	0	0	33	32
2011.03.01 - 2012.02.28	100	100	3	3	70	75	33	34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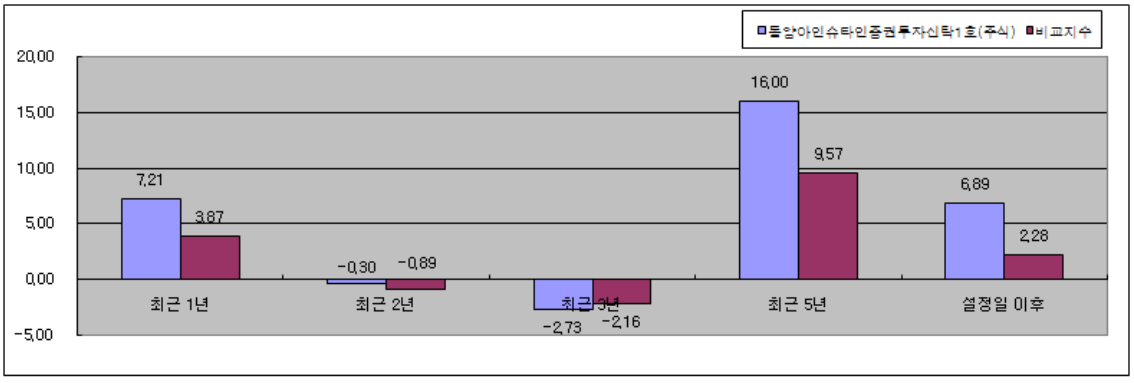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3.04.09 ~14.04.08	12.04.09 ~14.04.08	11.04.09 ~14.04.08	09.04.09 ~14.04.08	08.02.29 ~14.04.0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7.21	-0.30	-2.73	16.00	6.89
비교지수	3.87	-0.89	-2.16	9.57	2.2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5.61	-1.82	-4.21	14.29	5.28
비교지수	3.87	-0.89	-2.16	9.57	2.2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1	4.92	-2.51	-4.90	13.46	4.76
비교지수	3.87	-0.89	-2.16	9.57	2.92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5.41	-2.11	-4.54	13.79	4.70
비교지수	3.87	-0.89	-2.16	9.57	2.87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lassC2	4.99	-2.41	-4.81		-4.62
비교지수	3.87	-0.89	-2.16		-2.19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3	5.13	-2.28	-14.83		-8.88
비교지수	3.87	-0.89	-4.64		-4.37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4					0.50
비교지수					-0.32

[단위:%]

주1) 비교지수 : (1 * KOSPI)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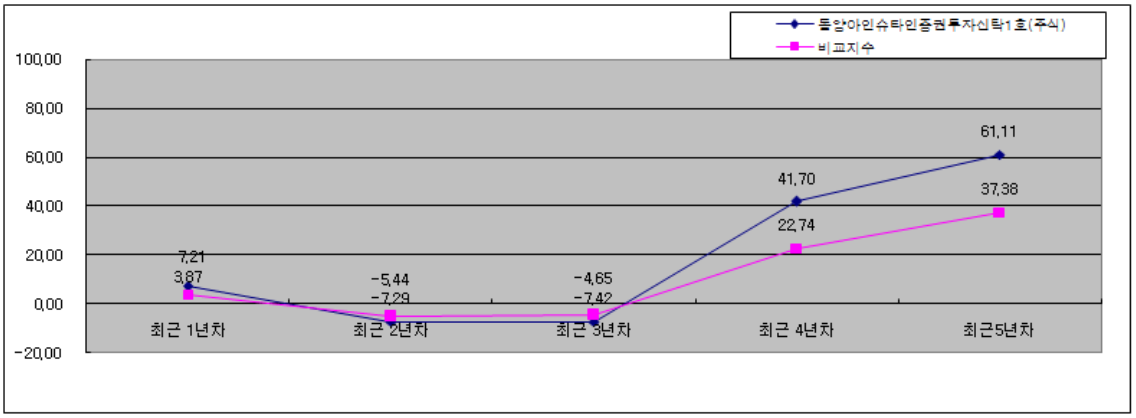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3.04.09 ~14.04.08	12.04.09 ~13.04.08	11.04.09 ~12.04.08	10.04.09 ~11.04.08	09.04.09 ~10.04.0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7.21	-7.29	-7.42	41.70	61.11
비교지수	3.87	-5.44	-4.65	22.74	37.3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5.61	-8.74	-8.81	39.75	58.77
비교지수	3.87	-5.44	-4.65	22.74	37.3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1	4.92	-9.42	-9.51	38.52	57.82
비교지수	3.87	-5.44	-4.65	22.74	37.38
동양아인슈타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5.41	-9.09	-9.21	38.92	57.84
비교지수	3.87	-5.44	-4.65	22.74	37.38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lassC2	4.99	-9.29	-9.42		
비교지수	3.87	-5.44	-4.65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3	5.13	-9.17	-35.29		
비교지수	3.87	-5.44	-11.72		
동양아인슈타인증권1호(주식)C4	0.50				
비교지수	-0.32				

[단위:%]

주1) 비교지수 : (1 * KOSPI)

주2) 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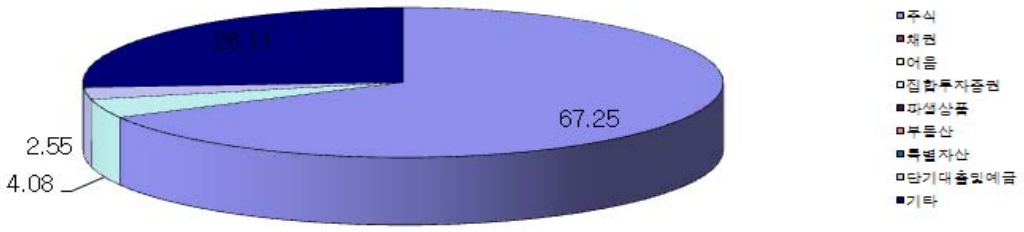

[2014.02.28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55	0	0	3	0	0	0	0	0	2	22	82
	(67.25)	(0.00)	(0.00)	(4.08)	(0.00)	(0.00)	(0.00)	(0.00)	(0.00)	(2.55)	(26.11)	(100.00)
합계	55	0	0	3	0	0	0	0	0	2	22	82
	(67.25)	(0.00)	(0.00)	(4.08)	(0.00)	(0.00)	(0.00)	(0.00)	(0.00)	(2.55)	(26.11)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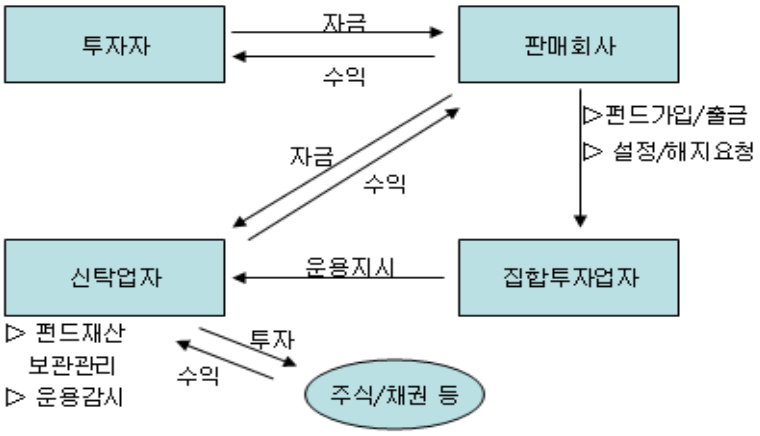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동양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동양증권빌딩 (02-3770-1300 www.tyam.co.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 (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자본금	200억원
주요주주	동양생명 73%, 동양증권 27%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13.03.31	13.12.31	항목	13.03.31	13.12.31
유동 자산	236.1	268.4	영업수익	257.8	161.1
고정 자산	412.6	335.5	영업비용	184.2	179
자산 총계	648.7	603.9	영업이익	73.6	-17.9
유동 부채	26.1	28.7	영업외수익	-	0.1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25.0	42.9
부채 총계	26.1	28.7	세전순이익	48.6	-60.7
자본금	200.0	200.0	법인세 비용	10.8	-12.6
자본잉여금	121.1	121.1			
이익잉여금	297.7	249.7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3.8	4.5			
자본총계	622.6	575.2	당기순이익	37.8	-48.0

라. 운용자산 규모

[2014.08.1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4,534	28,674	4,450	0	1,511	5,223	0	1,719	2,577	0	13,744	62,43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02-3770-8880)

회사연혁 등	1955.10 한국연합증권금융 1962.7 한국증권금융㈜로 개칭 1971.12 증권유통금융업무개시 2002.12 신탁업무개시
(홈페이지참조)	http://www.ksfc.co.kr/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02-2168-0440
회사연혁 등	설립일: 2000.6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 2000.9 신한은행 자회사 편입 : 2008.5
홈페이지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홈페이지
KIS 채권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월 자본금 : 30억원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T. 02-399-3350	설립일 2000. 5월 자본금 : 50억원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T. 02-398-3900	설립일: 2000. 6월 자본금: 30.2억원	www.nicepni.com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 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5) 투자신탁의 합병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①'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다만, '②'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합니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tyam.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동양증권	주요주주	위탁거래	주식	45,767
동양증권	주요주주	위탁거래	장내파생	4,367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1. 채권중개회사 선정기준

- 당사의 채권거래를 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고객 수익에 기여하고자 함.
- 채권거래가 익일 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

1) 선정기준

가. 거래상대방 (증권사 및 선물사)의 선정은 재무적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항목 및 가중치

- 재무건전성 : 30% (절대평가)
  * 영업용순자본비율, 총자본금 등
- 시장점유율(M/S) : 10% (상대평가)

* 협회 채권거래량 기준 또는 당사채권 거래량 기준

- 매매체결능력 : 30%(상대평가)
  * 당사 호가제시대비 적정호가 체결능력
- 리서치 및 시장분석서비스 : 25%(상대평가)

* 거래상대방의 리서치부서 및 애널리스트 보유 유무 및 당사 세미나 시행여부

- 운용지시처리의 신속, 정확성 : 5% (상대평가)
  * 거래후 발생하는 Back-Office 업무의 신속성, 정확성

다. 당사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는 가항의 평가기준이외의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방법

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매분기 단위로 실시합니다.

나. 절대평가항목이외의 상대평가 항목은 각 운용역, 트레이더 및 운용지시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 평가대상은 재무적 안정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에 따른 주문배분

가. 평가점수의 상대비율에 따라 A,B,C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나. 상대비율이 상위 20%를 A그룹, 상위 20%~50%를 B그룹, 50%미만을 C그룹으로 합니다.

다. 당사 전체거래량을 기준으로 A그룹에 60%이하, B그룹에 40% 이하, C그룹에 20% 이하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다항의 배분비율에도 불구하고 관계증권사에 대한 배분비율은 그룹과 관계없이 법정비

율은 그룹과 관계없이 법정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2. 주식 및 장내파생 중개회사 선정기준

1) 평가기준

가. 기업분석자료 제공

- 기업분석자료 내용 및 투자의견의 정확성
- 종목추천 및 Update

나. 기업방문/세미나 : 기업방문 주선 및 세미나 주관

다. 주문체결/매매협조 : 신속한 주문체결 및 매매 협조

라. 기타 요청업무의 신속정확성

마. 시장정보 제공 : 투자 아이디어 및 시장정보 제공

바. 수수료율 : 낮은수수료 적용

2) 중개회사의 관리

가. 집합투자업자는 매월말 위탁매매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중개회사를 선정하여 1개월간 거래를 하고 다음 월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나. 특정 중개회사와 위탁매매 업무 수행 중 중개회사의 중대한 오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에는 매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중개회사 선정의 특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이익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유가증권의 수급 불균형 또는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특정 증권사만이 매매가 가능한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관리/보관하는 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일반상품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